

의안번호	2213685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7.
추 계 번호	25E56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,082억원, 2031년 1,251억원 등 5년간 총 5,826억원(연평균 1,16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(안 제99조의15)	-1,082	-1,122	-1,164	-1,207	-1,251	-5,826	-1,16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9조의15 (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)	○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- 대상: 기본공제대상자*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(한도: 연 50만원) * 본인, 배우자, 부양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- 세액공제율: 12% - 적용기한: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보험료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9조의15 (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전제로, 세수효과는 징수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「보험통계월보」 및 「국세통계연보」 자료를 활용하여 간병보험료 가입자 수 및 평균 납입액을 추정함
 - 간병보험료 가입자 수는 보험통계월보의 ‘생명보험-보험계약성적표(종목별)’ 및 ‘손해보험-장기보험계약성적표(종목별)’상 ‘치매/장기간병 보험’ 2024년 말 보유계약 건수를 바탕으로 추정
 - 중복상품 가입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, 이를 고려하지 않음
 - 간병보험료 평균 납입액은 보험통계월보의 ‘생명보험-수입보험료 명세표(종목별)’ 및 ‘손해보험-장기보험 원수보험료 현황표(종목별)’상 ‘치매/장기간병 보험’ 납입액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
- 앞서 추정한 간병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자 수를 추정 후, 1인당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계
 -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므로, 전체 간병보험료 가입자 중 78.0%¹⁾만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
 - 2024년 기준 평균 간병보험료는 연간 92.7만원으로, 한도액(50만원)에 세액공제율(12%)를 적용하여 1인당 세액공제액을 산출한 후 대상자 수 및 면세자 비율²⁾ 등을 고려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전체 근로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(면세자)는 세액공제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세부담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계 시 이를 반영
 - 향후 세수효과는 매년 3.7%³⁾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

1) 2023년 귀속 기준, 「국세통계연보」 상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인원을 합한 전체 개인소득자(중복인원 제외) 중 연말정산 신고자 인원 비중은 78.0%

2) 「국세통계연보」 상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자(2,085만명) 중 면세자 비율은 33.0%임

3) 보험통계월보의 집계 기준이 2023년부터 변경됨에 따라, 장기 추세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생명보험사의 장기간병 보유계약건수(연말 기준) '19~'22년 연평균 증가율 3.7%을 활용하였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간병보험료 가입자 수) 2024년 말 기준, 간병보험료 관련 보험계약 보유건수는 345.2만건으로 파악
 - 생명보험사 226.9만건, 손해보험사 118.3만건으로 총 345.2만건

[표 2] 치매/장기간병 보험 보유계약건수: 2024년 말 (단위: 천건)

			보유계약 건수
생명보험	보장성	표준형	598
		무저해지환급형	1,671
	소계		2,269
손해보험	보장성	표준형	914
		무저해지환급형	269
	소계		1,183
계			3,452

주: 생명보험 '보험계약성적표(종목별)' 및 손해보험 '장기보험계약성적표(종목별)' 기준
 자료: 보험개발원, 「보험통계월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간병보험료 평균액) 2024년 기준, 간병보험료 1계약당 평균 보험료는 92.7만원 수준

[표 3] 치매/장기간병 보험료 납입액: 2024년 기준 (단위: 억원, 천건, 만원)

			보험료 납입액 (A)	보유계약 건수 (B)	1계약당 연간 보험료 (A/B)
생명보험	보장성	표준형	4,050	598	67.7
		무저해지환급형	13,675	1,671	81.8
	소계		17,725	2,269	78.1
손해보험	보장성	표준형	9,700	914	106.1
		무저해지환급형	4,568	269	169.8
	소계		14,268	1,183	120.6
계			31,993	3,452	92.7

주: 1. 생명보험 '수입보험료 명세표(종목별)' 및 손해보험 '장기보험 원수보험료 현황표(종목별)' 기준
 2. 계약유형은 '월납+기타', 보험료는 '초회보험료+계속보험료' 합산
 자료: 보험개발원, 「보험통계월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간병보험 가입자 수에 근로소득자 비율을 적용해 대상자 수를 추정하고, 1인당 세액공제액을 적용해 세수효과 추계
- (공제 대상자) 간병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자는 간병보험료 가입자(345.2만명)의 78.0%인 269.2만명 수준으로 추정
 - －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를 합한 전체 개인소득자(중복인원 제외) 중 연말정산 신고자 인원 비중은 2023년 귀속 기준 78.0%임
 - (1인당 세액공제액) 보험료 연간 한도액(50만원) 및 세액공제율(12%)를 적용한 공제액은 6만원 수준
 - － 간병보험료 1계약당 평균보험료(2024년 기준)는 연간 92.7만원으로 개정안의 보험료 한도액(50만원)이 적용될 것으로 가정
 - (전체 세수효과) 1인당 세액공제액에 공제 대상자 수를 곱하되, 면세자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정

[표 4] 간병보험료 세액공제액 추정

간병보험 가입자 수	근로자 비율	세액공제 대상자	1인당 세액공제액			결정세액 존재하는 근로자 비율	연간 세수효과
			연간 보험료 (한도 50만원)	세액 공제율	세액 공제액		
A	B	C=A×B	D	E	F=D×E	G	C×F×G
345.2만명	78.0%	269.2만명	50만원	12%	6만원	67.0%	1,082억원

자료: 보험개발원, 「보험통계월보」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앞서 계산한 공제액을 기준으로, 향후 세수효과가 매년 3.7%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
- (추계결과)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,082억원, 2031년 1,251억원 등 5년간 총 5,826억원(연평균 1,16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(안 제99조의15)	-1,082	-1,122	-1,164	-1,207	-1,251	-5,826	-1,165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